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 - 성경적 원리에서 해답을 찾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문제의 제기

기후위기시대에 인류는 지구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존재이자 추상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기후위기’<sup>1)</sup>란 지구에 대한 세계적인 온난화의 위협을 나타내냄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완화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기후변화가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면 기후위기관 용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sup>2)</sup> 근래에는 이를 기후재앙이라고 칭하면서 기후변화의 극단적인 악결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기후위기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후위기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삶의 질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인류의 존속문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시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빅뱅의 물리학 이론을 창시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구폭발, 환경오염, 핵전쟁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지구의 대체재로 화성을 꼽고 인류의 희망은 화성이라고 하면서 서둘러 인류가 지구를 탈출할 것을 권하였다. 기후위기가 지구의 종말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양극화현상과 지역과 계층간의 격차를 낳기도 한다.<sup>3)</sup>

1) 기후위기는 지구에 대한 세계적인 온난화의 위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심각한 기후변화의 완화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예컨대, 2020년 1월 세계의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생명과학 잡지는 “기후위기는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생물권(biosphere)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광범위한 중대가 기후위기에서 기인된 언급되지 않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기후변화 보다는 기후위기,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후재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태계 혼란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가치중립적인 기후변화의 용어를 기후 온난화로 대체하여 부르면서 더 많은 심정적 참여와 행동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를 기후위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강력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3) 캐나다 경제분석회사 ‘RSM’의 조셉 브루수엘라스 Chief Economist는 경제 회복이 ‘K’자 형태로 이뤄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 누적된 소득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이제는 경제 회복 단계에도 영향을

환경문제 혹은 지속가능성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각 개인의 만족과 환경의 질 확보는 한편으로는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은 개인의 이익 혹은 자신의 행복의 최대화를 원하지만 모든 개인의 욕구 조건이 충족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발전<sup>4)</sup>이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1호).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1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8호). 한마디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패러다임이다.

본고의 출발점은 과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상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재의 기후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립된 가치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현재 수준의 환경을 물려주면서 지속발전가능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다. 전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철학의 정립과 함께 ‘기후정의(Climatic Justice)’<sup>5)</sup>에 입각한 가치지향적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간단하게 국제적 국내적 기후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개관한 다음 기후위기의 대응방안을 성경의 원리에서 탐색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 II. 현재의 기후 관련 정책과 제도 검토

### 1. 국제적 노력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출간하여 과학기술이 초래할 환경오염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하였다. 이 책에서 DDT 등의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

---

미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회복기에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4)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sup>4)</sup>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5)

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말을 경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인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였다. 이 때 범지구적 환경이슈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졌다.

1988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있다. 이는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평가보고서('90)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1992년에 채택하였으며, 제2차 평가보고서('95)는 1997년에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하였고, 제4차 평가보고서('07)는 기후변화나 심각성 전과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제5차 평가보고서('14)는 파리협약('15)에서 채택하였다. 본 기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산화탄소량의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지구적 기후위기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온실기체에 의해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sup>6)</sup>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법적 역할을 정의하고, 원칙으로서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지속가능발전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쟁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이후 1997년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나왔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법적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6대 온실가스규정(Annex A)<sup>7)</sup>을 두었고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5년에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6)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4개 당사국에 의해 공식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7) 즉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s, PFCs, SF<sub>6</sub>을 온실가스로 규정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를 오래 동안 배출해 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며, 2020년부터 선진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 밖에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가 있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서 환경친화적인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민관협력 국제 플랫폼이다.<sup>8)</sup> 2018년 1차회의가 덴마크에서 개최되었고 2차회의가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5개의 중점분야, 즉 식량 및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을 중점분야로 하고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피하고자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시대에 전지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국 중심의 경제발전모델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경제적 공조가 가능하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sup>9)</sup>

## 2. 국내 정책과 법제도

한국은 2017년 기준 연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세계 9위, OECD 국가 34개 중 4위이며, 매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잘 만들었지만, 석탄 기반의 중공업 국가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은 대부분 핵발전소이며, 국제적인 수준의 재생에너지는 3%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sup>10)</sup> 2020년 4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

---

8) 회원국 아시아에는 대한민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주에는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유럽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공 등 12개 국가이다.

9) 국제적 합의에 따라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양의 산성화 등과 같은 여러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농림수산, 보건, 수자원, 재해방지, 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10) 2020년 4월 6일 영국의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언론사인 카본브리프(CarbonBrief)에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보도의 내용으로서 이 이외에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50%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부분에서 배출량 최다이나,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되고 있고, 석탄발전에 과도한 혜택을 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좌초 자산 위험 부담(120조 원 규모), 유럽 배출권 거래 시장 이후의 최대 시장을

배출 제로라는 정치적 선언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시대적 조류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조응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제를 개관하기로 한다.

### (1) 정 책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환경보전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선언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은 경제·사회·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의 문제이다. 2012년 11월 국회에 마련된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발간한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토론회 및 정책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정책을 ① 총론, ② 기후변화 적응정책, ③ 온실가스감축 정책, ④ 에너지 수급정책, ⑤ 기후변화 대응정책, ⑥ 기후변화 정책체제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본 체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을 분리하고 있으며 적응정책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에는 국제협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녹색금융과 기술개발, 녹색소비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정책체계는 녹색성장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입법, 행정체계, 재정운용, 거버넌스로 분류하고 있다.<sup>11)</sup>

2015년에 제1차(2011-2015)에 이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되었다.<sup>12)</sup> 성과도 있었으나 평가에서 적응대책 실질적

---

보유했으나 유럽과 달리 무상할당 방식 사용, 신규 산업설비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미적용으로 저탄소 설비 사용의 의무가 없고, 한국 기후변화 현상 노출 빈번화 등을 지적하였다. The Carbon Brief Profile: South Korea(Carbonbrief, 2020.04.06.).

11) 국회기후변화포럼,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토론회 및 정책보고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2.11.13.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정부 들어와서 기후에너지 정책은 청정기술을 통한 기후위기의 최소화에 있다.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으로 대변되는데, 그린뉴딜은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과 불평등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sup>13)</sup>”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탄소가스 저감 정책으로서 석탄에너지와 원자력 줄이고 태양광, LNG, 풍력 발전소 건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하는 해인데 환경부는 9월 28일 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전 국가구현’을 최종목표(비전)로, ① 6대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②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③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12개 세부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6대 부문으로는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를 지표로 정하였다. 핵심전략으로는 기후탄력성 제고, 취약계층 보호, 시민참여 활성화, 신기후체제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예정된 기후변화에 대하여 적응력을 키우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표적인 예가 온도가 20 C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비와 적응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 (2) 법제도 개관

법령 중 제목에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들어간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조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법률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 1. 13.에 통과되어 같은 해 4. 14에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같은 법은 현재 기후변화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입법은 2008년의 지속가능발전법기본법이다. 동법은 지속가능성이란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

---

1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원칙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부합, 기후변화 취약계층 고려 및 적응대책이 효율성·효과성 제고, 과학적 근거·지식 및 기술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대응,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창출, 정책 이행 체계 강화 및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소통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13) 이유진, 민중의 소리, 그린뉴딜 리포트 코로나 19 경제대책,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 2022년 대선까지 열린 의제 그린 뉴딜, 2020. 4. 13.

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후 동법의 내용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흡수되고 현재 소수의 조문으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변경하여 존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2012. 5. 14. 공포되고 2012. 11. 15.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이 존재한다. 결국 형식적 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한 상위규범으로는 최고규범인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권도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한 법률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제22조에서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녹색경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제4항).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38조에서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sup>14)</sup> 제39조에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제40

---

14)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1호).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2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3호).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

조에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제41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42조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43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촉진, 제44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46조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제47조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 제48조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sup>15)</sup> 도입에 대해 다른 법인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제48조와 제5장이 직접적인 기후위기 관련조항이다.

특히 동법 제39조에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의 획기적 향상, ②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③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④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⑤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 확대, ⑥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 강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법」은 2012.5.2.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5.14.에 공포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4호).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5호).

15)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동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이다. 본 법안은 2013년 이후 Big Ask network를 통해 국민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능동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서 2014. 11. 5.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sup>16)</sup>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한 법률로는 「환경보전법」, 「생물성 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률들도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에 조응하여 친환경에너지정책이나 화석연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후취약계층의 보호까지 염두에 둔 입법을 하고 있다.

### II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경적 원리 탐색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로서 작용한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sup>17)</sup>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산업혁명 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 인구의 약 18%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북반구 선진국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다. 대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요한 이유는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나라에서도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서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오늘날 ‘기후정의’란 개념

---

16) 빅 에스크 네트워크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 담아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①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과 의무, ②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방안 및 식량에너지물 위기극복방안, ③ 명확한 중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 ④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역할, ⑤ 약자보호 우선의 원칙, ⑥ 투명성의 원칙 ⑦ 세계적 차원의 시민연대와 협력의 정신 등을 제시하였다.

17)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증여론」에서 공동체는 증여의 은총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본래 공동체적 존재라고 한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증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되고

이 등장하였고 취약국가 국민들의 삶을 선진국 국민들의 삶과 대비시키면서 기후정의의 회복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찾고자 한다. 그 작업은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추구이다.

## 1. 안식의 원리 : 쉼, 축복, 창조질서의 원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사이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8).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도록 위탁함과 동시에 명령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먼저 안식의 원리를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엿새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으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쉼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장 12절)고 하셨다. 안식일에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휴식하도록 한 것이다. 안식일 규정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종교법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규범으로서 역할이다.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창조사역의 본질은 일과 안식이다. ‘노동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인 동시에 바로 인간세계의 원리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유주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일과 안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제23장 12절은 종교규범이면서 사회규범으로서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과 나눔에 있다.<sup>18)</sup>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 쉼,<sup>19)</sup> 치유, 축제, 하나님 앞에 동등한

18) 최중호,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사상 2008년 겨울호,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8.12., 141면.

19) 여기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평안함, 영적인 내려놓음, 살림의 의미로서의 쉼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맥락에서의 쉼이다.

인간의 권리를 상징한다.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안식의 그리스어는 anapauso인데 창조질서에 그대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제23장 본문은 사회 정의와 사회 복지에 대한 법규이다. 이 이외에도 신명기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어버리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단을 다시 가서 취하여 와서는 안된다(신 24:19)라는 규정도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이다. 사회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은 개개인의 올바른 도덕과 공정한 처신을 기초로 한다(1-9절). 그리고 사회복지 구현해 나가는 일은 경제적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따뜻한 배려를 해줌으로서 이루어진다(10-12절). 결국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 공동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3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식의 원리를 안식년 규정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다. 이 규례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이다. 가난한 자들이 땅을 경작하여 수확하여 살도록 한 규례이다. 사회복지차원의 율법이다. 더 나아가서 들짐승까지 배려하는 규정이다. 오늘날에도 포획과 남획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과의 공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날 자연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율법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구현된 곳이 있다. 바로 휴전선이다. 1953년 전쟁의 포화가 멈춘 후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지 70년이 다가오자 휴전선 안에서는 놀랍게도 생태계가 복원되고 한국 내에서 종의 다양성이 제일 확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숲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서 창조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2. 회년의 원리 : 치유, 회복의 원리

회년은 안식년 7년이 7회 반복되는 해, 곧 50년째가 되는 해이다. 레위기 제10장과 제25장에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회년이니 거룩함이라고 한다. 회년은 한 마디로 잃었던 땅과 신분을 회복하는 해이다.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또는 해방)가 선포되면

빛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회년제도는 매우 독특하였다. 회년과 회년 사이의 49년 동안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땅을 사고팔 수도 있었다. 다만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회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루고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회년이 되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회년이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가나안 정착 시에 분배받은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다. 적어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회년법에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관념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위기 25:23) 라는 말씀에서 드러난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회년제도의 원리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한 자녀라는 넓은 의미의 가족공동체라는 데서 비롯된다. 회년의 근거는 안식년에 있고, 안식년의 출발은 안식일이다.

또한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여 시는 나그네처럼 여겨 회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회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고 한다. 회년의 원리는 인간의 본능적 탐욕에 대한 제도적 관여로서 ‘자유와 회복의 원리’이다. 신분이나 소유에서 전적으로 종전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유사 이래 획기적인 원리이다.

### 3.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 : 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가족수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으나 거둔 것을 측량해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고, 모세는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릴리 호수 근처 들에 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남성만 오천명이 모였는데, 오직 한 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감사리도를 하고는 제자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광주리에 담았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후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적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며 남은 것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도의 이윤추구와 생산의 잉여, 자원의 낭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준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전세계에서 생산되고 나서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가 4천억 달러(43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의 환경자원 자문기구인 ‘폐기물자원 행동 프로그램’(Wrap)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경제·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전 세계 음식물 총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로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8억 7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인 비용 손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 4. 이삭의 원리 : 나눔(증여)<sup>20)</sup>의 원리

20) 증여의 원리는 인류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모스는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를 실천으로 이끄는 인간 동기는 모순되게도, 자유와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데 대한 상제는, 마르셀 모어의 증여론,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 7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11., 9면 이하.

룻기 2장과 3장에 보면, 모압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 이방인 룻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효성이 지극한 룻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전통(고엘)에 따라 일꾼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밭의 주인은 친척인 보아즈였고, 그는 일꾼들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룻이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실제 보아즈는 이스라엘의 전통인 고엘에 따라 룻에게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줍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라는 말을 하게 한다.

자본주의의 심화로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유사 이래로 가장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과 정보의 집중과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부자와 빈자의 간극을 더 넓히고 있으며 그 지위의 고착을 심화하고 있다. 룻기에서 보이는 보아즈의 나눔의 정신은 국가간 혹은 국내에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 5. 초대교회의 원리 :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자발적 원시공산공동체’이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케 되었고,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였고

진정한 나눔과 희생을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서로에게 헌신했고, 둘째,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고, 셋째,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들이 없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각국은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였고, 한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동안 자유무역주의가 주류였으나 이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보복까지 서슴지 않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약소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 국가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이 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K 자형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시기에 초대교회의 나눔과 헌신의 정신은 중요한 원리로서 다가온다.

#### IV. 바람직한 정책, 제도 대안 모색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좋은 삶은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의 개인선과 공동체 내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복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동선과 공공의 선 혹은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선의 조화로운 실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선과 공공의 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의 실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환경문제 혹은 지속가능성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각 개인의 만족과 환경의 질 확보는 일면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은 개인의 이익 혹은 자신의 가치가 최대화가 되길 원하지만 모든 개인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선과 공공선을 형량하여 만족을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기후정의의 회복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sup>21)</sup> 기후정의의 회복의 주체는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소비자 모두이다. 이제 개인으로서 환경소비자는 그린슈머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제품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배출원을 가진 기업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비용부담 및 비용전가

---

21) 기후정의의 회복은 공동체주의적 정의 내지 공화주의적 정의와 관련된다. 개인의 합리성과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주의적 정의관념은 기후정의의 회복이라는 입장에서는 배치될 수 있다.

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창조 이후 창조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준비한 것처럼 현대인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대형 삼림화재 등을 통하여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지속가능성’이란 패러다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성경은 기후위기를 맞은 인류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식의 원리이다. 쉼과 창조질서에의 환원이다. 무질서한 개발이나 산업화, 도시화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물 등 많은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패러다임보다는 창조질서에의 환원을 위한 ‘안식’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것, 숲도 일정기간 휴식을 주면 복원되는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의 원리이다. 치유와 회복의 원리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은 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방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자본과 자원은 지구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회복의 원리는 그러한 불평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셋째,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이다. 즉 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 원리이다. 만약 전지구적으로 나눔이 실천된다면 현지보다 인류는 훨씬 공동선을 이루며 기후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출거래제, 플라스틱제품의 사용 억제정책, 쓰레기 분리배출, 기업에 대한 환경오염 부담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친환경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넷째, 이삭의 원리 즉 나눔의 원리이다.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서 기후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좀 더 나눔의 정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탄소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며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초대교회의 원리이다. 즉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헌신, 희생의 원리이다. 회복과 나눔은 동세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나눔까지를 포함한다. 단순히 수평적 평등이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평등, 세대간 평등을 말한다.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태계에 안식을 허락하여 원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복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전 인류가 지구적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지구공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2020년 현재 지구종말시계는 23시 58분 20초를 가르키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핵폭탄보다 더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결국 물러설 곳 없는 인류의 희망은 '성경'(말씀)에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병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책숲, 2019, 18p.  
남성현,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 기후변화부터 자연재해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공존 플랜, 21세기 북스, 2020.6.  
박덕영외 2인,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박영사, 2019.  
이안 앵거스 편/김현우 등 공역, 기후정의-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이매진, 2012.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역, 글로벌 그린뉴딜, 믿음사, 2020. 15p.  
녹색전환연구소 역, 열 가지 그린뉴딜 어떻게 비교할까요.  
파리협정 길라잡이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계, 환경부, 2016. 5.

### [논문]

- 김성배,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2. 389면 이하.  
박종원, 영국 기후변화법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환경법학회, 2016.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 (281), 2020.8., GS&인스티튜트.  
맹주만, 톨스와 센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32,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2.11.  
오은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 종교문화학보 제14집,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7.12.  
오은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독교의 실천전략, 종교문화학보 제13집,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6.12.  
장신, 개도국 입장에서 본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협상 과정과 성과, 법학논총 제40집 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2.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GSnJ(281), 2020.8.  
최중호,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사상 2008년 겨울호,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8.12.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5. 12. 관계부처 합동 작성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 - 성경적 원리에서 해답을 찾다	발표자	송오식
		논찬자 (소속)	오민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먼저 논찬자로 초대해주신 기독교학문연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표해주신 송오식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전 세계를 휩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여 맡기신 지구를 관리해야 할 인간은 그 책무를 외면하고 인간의 경제발전이라는 우상 아래 주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일반 시민도 그리고 전 지구인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께서 제시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철학의 정립”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입각한 가치지향적 정책 및 목표”의 탐구에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통한 기후위기의 대응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로 사료됩니다.

본 발표문은 기후위기의 주요한 이유로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이며, 이에 대한 손해는 취약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대 사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철학적, 법제도적 해결이 기후정의라는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정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의 어떤 원리에 있어서 실천적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다섯 가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안식일의 원리, 회년의 원리,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 이삭의 원리,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원리이자,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원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본 논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원리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법제도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년의 원리는 현대의 소유권 제도와 상충하는데, 회년의 원리는 현대의 소유권 제도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시한 원리들은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시혜의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시혜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리들은 개인도덕의 차원과 사회도덕의 차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원리들이 도덕차원의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 규범성과 강제성을 갖는 원리가 될지, 또는 이 원리들에 비추어 현재의 법제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한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